

지역 소멸과 사람이 오는 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이소아

1. 들어가며

가. 농어업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님

○ 농업 생산과정은 ‘인력에 의한 섬세한 작업과 동력, 기계장치를 활용하는 물리적 작용이 이루어져야 함¹⁾.

- 노지 채소 작업 : 묘판 준비하기, 씨앗 뿌리기, 묘 키우기, 땅 고르기, 두둑 만들기, 비닐 씌우기, 옮겨 심기, 비료 농약 살포, 잡초 제거, 수확, 수확물 운반/ 각 단계 중간에 이루어지는 준비, 기계장비 시설의 세척과 관리 등 복잡 섬세한 작업임.

○ 어업도 마찬가지 : 자망, 낭장망, 인강망, 통발, 단지, 주낙 등 잡는 어종, 양식 방식 등에 따른 그물의 종류, 잡는 시기, 방법이 모두 다름.

○ 농어업은 전문가가 하는 일. 아무나 대충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나. 농수산물을 싼 값에 먹어왔던 소비자로서의 책임 -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가

○ 1970년대 240만에 이르던 농가수는 2019년 현재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 가구로 줄어들었으며, 1970년 75만에 이르던 어가인구는 2019년 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만4천가구로 줄어들었음. 그나마도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6%, 고령화지수는 1,073, 어가 고령인구 비율은 39.2%, 고령화지수는 675로 농어촌 사회는 초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현격한 농어가수 감소 이외에 농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농어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

○ 반면 농산물의 생산량은 1970년 14만톤이었던 것이 2019년 244만톤으로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어획량도 전복과 김양식을 기준으로만 보아도 전복은 2006년 2500톤에 미치지 못하던 것이 2020년에는 그 7배인 2만톤에 이르며, 김 역시 같은 기간 두 배 이상의 어획량이 증가하였음.

○ 이렇듯 농민과 어민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음에도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

1) 장민기, 농업현장에서 살펴본 농업노동력 운영 실태와 과제, ‘2020 한국농촌사회학 세미나’, 2020.

고 시가가 낮아진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같은 기간 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농어업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단기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비율도 비례하여 높아짐²⁾.

다. 농어업의 산업경제적 특징

- 먹거리에 필수적으로 의존. 모두가 소비. 모든 산업 근간
- 노동력 집약 산업, 노동의 수요 비탄력성, 가격 비탄력성
- 모두 자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 농업의 경우 일부 시설 작물을 제외하고는 노동력이 365일 일정하게 투입되지 않으며 대체로 수확기에 가장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작물에 따라 (채소) 아주심기, (과수) 열매 숙기, 전정, 꽃눈 꽃봉오리 꽃숙기 작업에도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며 이외의 기간에는 노동 수요가 적음.
- 계절 집중, 작물마다 다른 노동 투입시기 => 일률적인 틀을 정하기 어려움. => 이를 메우기 위한 비용들에서 자유롭기 어려움.
- 농어업 노동력 운용을 제조업 노동과 같은 기준을 들이댈 경우 사용자인 농어민들에게도 비용부담(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 > 반면 노동자들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는 족할지 모르나 안정적인 노동조건(4대보험 등)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노동자들의 욕구도 다양 (알바를 원하는 경우, 고용 안정을 원하는 경우)
- 결국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그 비용을 도와 정부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2. 이민의 도구화, 이민의 차별화

가. 전남에서 이민을 말할 때

- 지역 소멸, 농어업 노동력 절대 부족, 초초고령화

2) 윤자호,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비전문취업자,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7쪽, 8쪽.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나. 생산수단으로서 도구화

국무총리실의 발표 : 산업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 체계 마련

가. 국무총리실 보도 자료 2024. 6. 20.

-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 *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여가부 등 11개 부처
 - ** (현장) 농어업 등 업종별·지역별 의견수렴(9회), (전문가) 대학연구소 등 전문가 토론(7회)
-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행 비자별 수요에 단기대응 → **개선**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 + 부처 인력정책 연계

계절근로 (E-8)	법무부
비전문취업 (E-9)	고용부
선원취업 (E-10)	해수부

농축산업 (E-8, E-9)	농식품부
어업 (E-8, E-9, E-10)	해수부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E-9)	고용부 + 관계부처

현행 비자별 인력관리 → **개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총량 조정

계절근로 (E-8)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
비전문취업 (E-9)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선원취업 (E-10)	노사 합의 및 법무부 승인



국무총리실 발표 :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총리 주재 위원회로 일원화

다. 안전하고 똑똑한 사람만 이민받겠다는 착각과 차별

- 법무부와 지자체의 관심사 : 이탈을
 - 법무부에서 ‘계절근로’ ‘배정’ 단어 로 검색하면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9.6%→1.6%\)](#) 2023.12.28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경과](#) 2023.09.11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경과 - 계절근로자 전년 동기 대비 입국 3.5배 증가, 이탈률 1/9로 감소

- 안전하고 똑똑한 사람만 이민자로 받겠다는 시각은 법령에서도
 - 예.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계절근로는 법률의 근거가 빈약함.
 - 아래 법령의 비교에서

○ 전남은 인구청년이민국(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 내 지역특화 비자, 다문화지원팀 등과 관련한 팀이 있으나 계절근로는 농업정책과로 분산.

라. 계절이주노동자를 이민자로 생각하지 않는 착각

- 2024. 2. 25.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 부모까지 확대 : C-4, E-8로
 -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 협력방안 시범 시행, 역량강화 워크숍

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으로 본 농어업 이주노동 개관: 외국인 계절근로 중심

가. 농어업 이주노동 체류자격별 요약

○ 아래는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체류자격별로 표로 정리함.

고용허가제 E-9/ 혹은 H-2	계절 외국인 노동 (C-4 90일, E-8 5개월)	불법 중개업 ³⁾
장기 근로	단기 근로	주로 단기
법무부 쿼터(국가 MOU)	법무부 쿼터(지자체 MOU)	-
농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월 209-226시간)	표준 계약서	-
개인 농어민의 경우 건강보험X .산재보험X 국민연금 차별	E-8의 경우 농어가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근로자 파견,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 당연히 4대보험 가입 안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	
외국인근로자고용에관한법률	<u>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u> 제10조 근거 규정 빈약	

- 6개월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높은 품목은 축산과 시설작물, 특용작물, 버섯, 화초 관상작물과 축산업⁴⁾이고, 자연스럽게 장기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 비자(E-9)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음.
- 6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고용된 품목은 채소·산나물 (시설, 노지) 품목이며 그 결과 여기에는 미등록이 가장 많음. 계절근로, 단기취업비자로 적법하게 일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행 중인긴 하나 비율은 낮음.
- 어업의 경우 일부 양식장을 제외하고는 조업기가 정해져 있으며, 어떤 경우는 금어기가 있는 경우도 있음.
- 농어업 모두 품목에 따라 노동력 운영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음. 그 결과 안정적인 장기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주여성(과 그 본국의 가족들이 초청된 경우) 경우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노동력 수요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등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전무함. 계절 근로가 도입되었으나 미등

3)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거나 파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농림수산부는 각 지역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세워 농업 인력 자원을 연결하려고 하나, 이는 내국인만 해당됨.

4) 엄진영,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정책 방안」, 2020., 41쪽

록의 비율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됨.

나. 외국인 계절근로 E-8 최근 추이⁵⁾

1) 계절근로 개관

○ 2005. 도입 초기 1,000명 신규쿼터 -> 2024년 도입쿼터 26,000+a 명.

2024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49,286명(131개 지자체)

비교) 2024. E-9 고용허가제 농어업 쿼터(16,000 +a 명)

○ 농어가당 배정 인원수 : 2019년 4-5명, 2021년 9-12명.

○ 계절근로 도입 방식

i) MOU 체결방식 (E-8-1 농업, E-8-3 어업)

ii) 결혼이주여성 친지 초청 방식(E-8-2 농업, E-8-4 어업)

=> 농업 E-8-1, 2/ 어업 E-8-3, 4

○ 2024. 2. 25. 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 부모까지 확대 : C-4, E-8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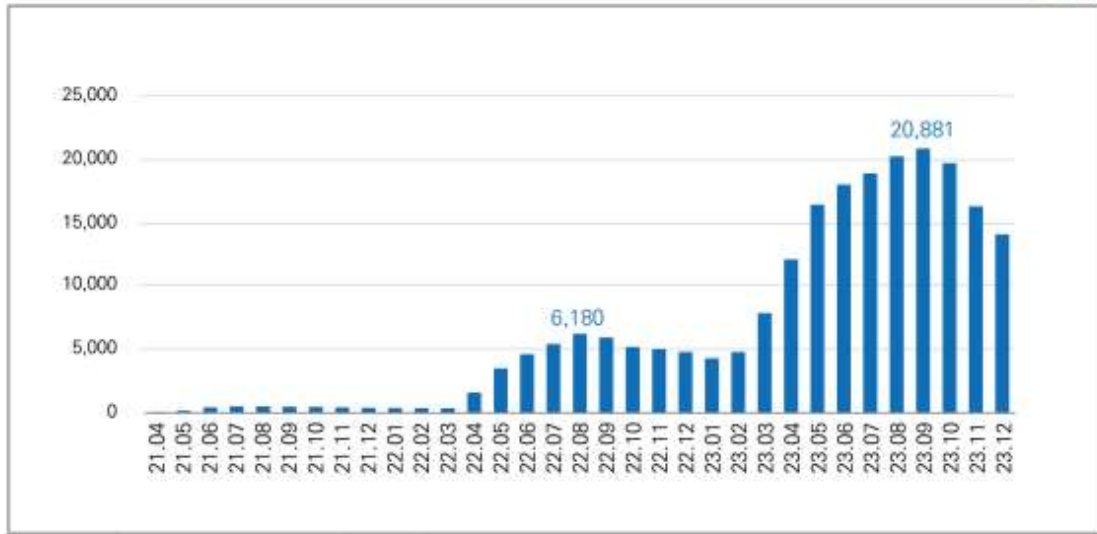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이(월별)

5) 이 항목의 통계들은 아래 자료에서 발췌함.

박성일, 최서리, 「계절근로자 행정통계의 이해와 추이 분석(2001~2003)」, 이민정책연구원., 2024. 4

〈그림 2〉 월별 계절근로(E-8) 체류자격자 추이 (21.4.~23.12)

단위: 명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각 월

○ 계속 증가. 상대적으로 노동력 수요가 많은 여름에 그 규모가 증가하다 겨울에는 감소하는 경향.

○ 2022년 8월 에는 6,180명이었다가 같은 해 12월에는 4,767명이었으며 2023년 8월과 9월에는 2만여 명이 넘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같은 해 12월에는 14,143명이 계절근로자로 국내 일하고 있었음.

○ 일반적으로 국내 외국인에 대한 현황 분석(체류자격별 현황 포함)을 할 때 12월 말 기준 통계치를 많이 활용. 계절근로자의 경우 연도 말 기준으로 통계치를 비교하게 되면 농 어업의 현실을 굉장히 왜곡하게 됨. 따라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전망할 때에도 이러한 월별 노동력 수요 편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3) 계절근로자 도입분야 및 도입 방식 변화

○ 계절근로자제는 도입 초기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다 점차 어업분야로 확대하는 양상. 종전 E-9 문제 반복.

○ 계절근로에 종전에는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농어업안전재해보험으로 대체.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대응 어려운

문제.

- 건강보험 문제. 폭염으로 인한 산재 질환, 사망 사건 대응 등의 문제.
- 전체 계절근로자 중 농어업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큰데,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12월의 경우에는 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농업, 어업의 계절근로자 수요의 발생 시기에 계절적 차이).

<2023. 상반기 법무부 계절근로자 배정결과 표>

지 자 체		농 업		어 업 ⁶⁾		합 계	
광역시	시·군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11개 광역시	124개 시·군	7,154	24,418	620	2,370	7,774	26,788

○ 구체적으로 2023년 6월과 9월에는 농업 계절근로자가 약 95%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2022년 12월, 2023년 3월에는 각각 81.8%, 80.9%로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 각 도입방식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22년 1분기 MOU 체결방식이 다수를 이루다 점차 친인척 초청 방식이 증가하여 2022년 12월에는 MOU 방식과 친인척 초청 방식의 비율이 대등해졌고, 2023년 9월, 12월에는 친인척 초청방식이 MOU 체결방식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그림 3> 참조).

○ 이는 MOU 방식보다는 친인척 초청 방식을 활용하였을 경우에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친인척 초청 방식을 장려하였기 때문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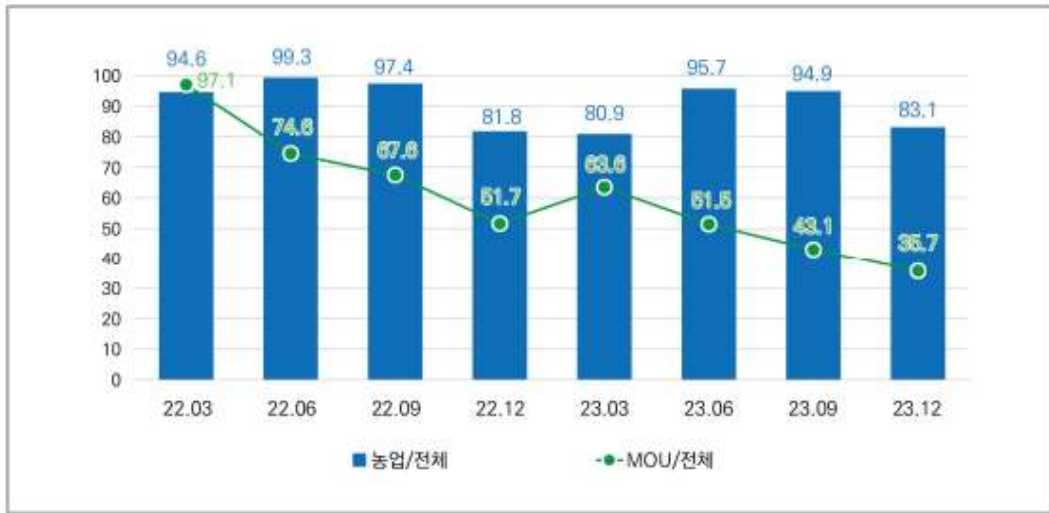
4) 지역 및 산업별 계절근로 이주노동자 분포(2023년)

○ 농업 분야

6) 경남 남해 78명, 통영 68명, 기장 62명./ 강진 3명, 고흥 86명, 신안 82, 완도 1004, 장흥 51, 진도 143, 해남 130(전남 총568명 전체 어업 중 약 1/4이 전남)./ 당진 7, 보령 364, 서천 197, 태안 95.

〈그림 3〉 분기별 계절근로자 도입분야 및 도입방식 추이 (2022-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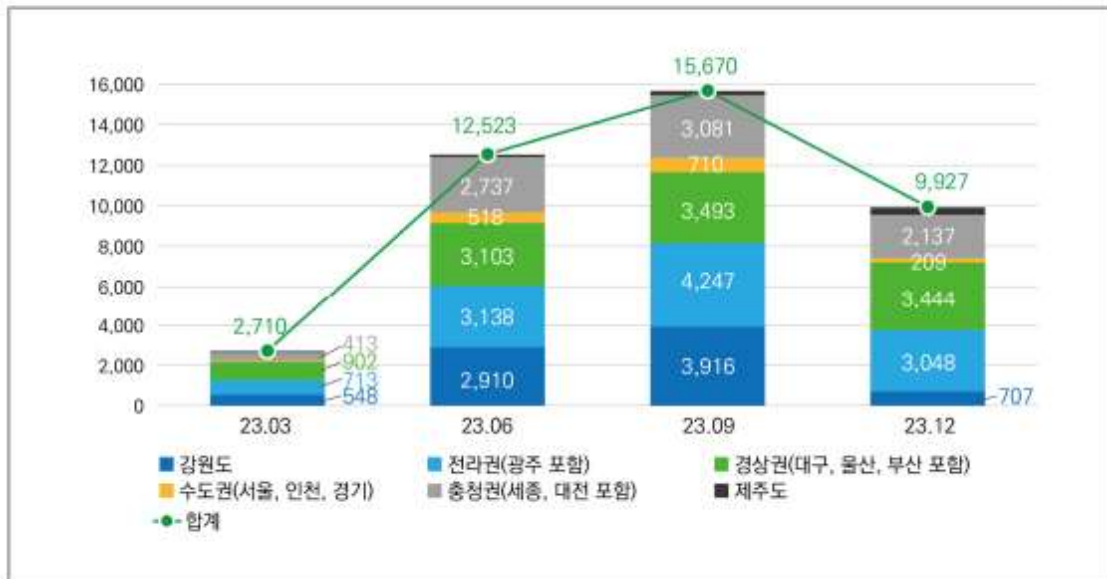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세부체류자격별 현황, 각 분기

〈그림 4〉 지역별 농업분야 계절근로자(E-8) 추이 (202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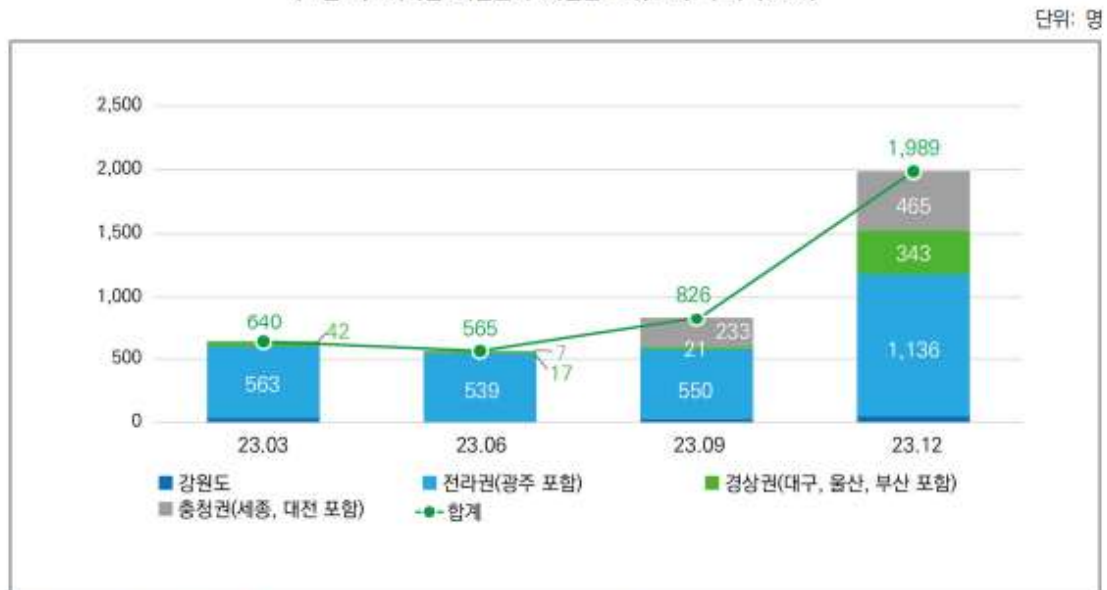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세부체류자격별 현황, 각 분기

- 분기별로 계절근로자의 지역별 분포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3월과 12월에는 경상권, 6월과 9월에는 전라권에 가장 많은 계절근로자가 일하고 있음.
-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4개 권역 중에서는 강원도에서 고용하는 계절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음

○ 어업 분야

- 2022년 12월의 어업 계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동절기에 상대적으로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을 보여줌. 또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라권의 어업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가 큼.
- 2023년 3월 총 640명 중 전라권 563명(88.0%), 경상권 42명(6.6%), 강원도 34명(5.3%)으로 전라권의 도입 규모가 절대다수를 차지.
- 같은 해 6월에는 총 565명으로 전라권 539명(95.4%), 경상권 18명(3.0%)으로 여전히 전라권이 압도적으로 고용 인원이 많았음. 9월에는 총 826명으로 전라권 550명(66.6%), 충청권 233명(28.2%)으로 충청권의 도입 규모가 급격히 늘어남.
- 12월에는 전분기 대비 2.4배 증가한 총 1,989명으로 전라권 1,136명(57.1%), 충청권 465명(23.4%), 경상권 343명(17.2%)으로 지역별 어업분야 계절근로자의 도입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그림 5〉 지역별 어업분야 계절근로자(E-8) 추이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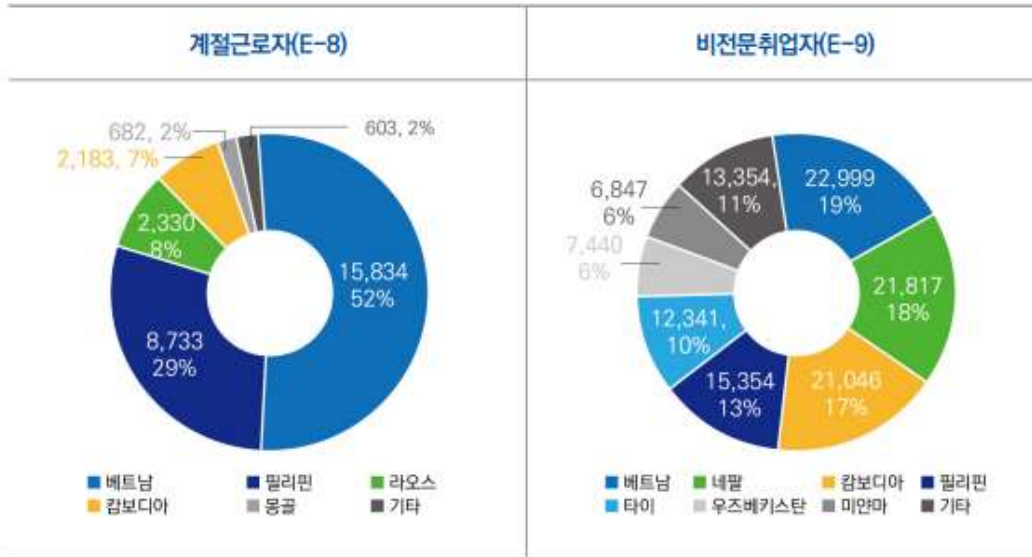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세부체류자격별 현황, 각 분기

○ 국적별 현황(2023.)

○ 계절근로자제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입국한 인

〈그림 6〉 계절근로자(E-8)와 비전문취업자(E-9) 입국자의 국적별 구성 비교 (2023)

단위: 명,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각 월

원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어가(농어업법인) 수와 신청 인원수가 함께 제시될 필요.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도별 도입쿼터가 발표되고 있는데, 공개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실제 신규 입국 인원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

3. 계절근로 (E-8) 등과 관련한 노동력 착취 사례 및 지원의 어려움

가. 사례

○ 2024. 1. H군

필리핀 A 지자체와 H군

MOU 체결 E-8 농업

중간 브로커 Hong, 여권 통장 아이디 카드 관리, 임금 중간 착취, 체류기간 연장 빌비 수수료 요구(과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동시에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첨부 1. 인신매매피해자식별지표고시 참조

-> 발견 경위 : 국가인권위 현장조사

-> 피해 노동자 피해 호소후 연결 될 쉽터도 없는 상황

-> 수사 담보 상태, Hong은 타 시도 에서도 여전히 브로커로서 활개를 치

고 다님.

○ 2024. 5. W군

MOU 체결 E-8 어업

브로커 Kim 등 다수

다른 사업장에서 노동, 여권 통장 아이디 카드 관리, 임금 중간 착취, 체류기간 연장 빌비 수수료 요구(과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동시에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 인신매매피해자확인서 발급 받음

-> 수사 담보 상태, 당사자들 개인 사비로 한국에 체류 중.

○ 2024. 8. Z군

결혼이주배경 여성 가족 초청 베트남 국적 노동자

근로계약서 상 딸기밭 근무

그러나 딸기밭에서는 한번도 근무 한적이 없이 노동자를 배정받은 사용자가 별목, 어업, 하우스 등 다른 사업장에 돌려 쓰고 중간 수수료를 받음,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

참고 :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문제되었던 S군의 염전에 계절이주노동자 배치

나. 어려움

- 당사자들 가까이에 상담, 인권침해를 신고하고 조력을 받을 기관 부재 (공무원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조력 필요)

- 사업장 변경을 넘어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쉼터의 부재

다. 농민 피해 : 반복되는 브로커의 노동 시장 임금 몰가 교란

1) 사례

농민이 브로커에게 주는 1인 일당 13-18만원

노동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일당 8-10만원

“나도 이 돈이 다 외국인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 영암, 나주, 남원 등 임금 담합 및 관련 조례 제정 : 그러나 노동 시장의 움직임은?

'일당 11만원' 목자...나주서 일하던 숙련 외국인들 다 떠났다⁷⁾

2) 공공형 계절근로 활성화 필요 그러나...

- 지역 농협들에서 담당

- 사업자 선정 기준 부재, 지자체와 협업(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라. 관련 실태조사 및 실질적 지원 조직 마련 필요

○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마련됨(2023.): 첨부 3 참조

- 담당 부서는 이민정책과, 그러나 계절근로 및 E-9 관련 담당부서는 다른 부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

○ 전라남도 계절이주노동의 인권침해 사례 보고 계속 되는 중에 이미 조례에 실시되어 있는 도 차원 실태조사 시급. 제2의 노동력착취 사태 우려

○ 각 시군과 협력하여 노동인권, 인신매매 등 관련 단위 교육 및 정기적인 점검 필요. - 더 이상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핑계를 대지 말고.

3. 이민 관련 특별법들 중에서도 농어업 계절 근로자는 다르게 취급

: 안전하고 똑똑한 사람만 정주하고 지원하겠다.

○ 이민 관련 특별법들(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행안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모범 역할을 할 특별법 제정?

○ 이 법들은 모두 안전하고 똑똑한 이주민을 전제로 함. 농어업 이민의 특성과 다름.

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721431>, 2023. 10. 27. 한국 경제

○ 계절근로의 근거 법률인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과 관련 특별법들의 내용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는 내용.

- 현대의 향소부곡 : 외국인, 농어업, 농어업 이주민

○ 일반법과 특별법의 득과 실 : 컨트롤타워가 생기느냐, 아니면 각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관련 법률들 비교

<p>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p> <p>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관리 등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행안부)</p> <p>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p>

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33호, 2024. 1. 16.,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6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① 정부는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가능 규모
3.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①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 해외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 해외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 그 밖에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점검할 수 있다.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①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보·안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해외인재유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 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해외인재유치센터에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

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포상·후생 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산업통상부장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7., 2021. 6. 15.>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11. 4. 4.>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ㄷ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 ▶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 ▶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 ▶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ㄹ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 ▶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 ▶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 제23조의2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 제23조의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 ▶ 제24조의2
- ▶ 제24조의3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㉔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 ▶ 제36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 제3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 제3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 ▶ 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 제4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 ▶ 제41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 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 ▶ 제43조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 ▶ 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 제45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 제46조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 ▶ 제4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4. 개별 법령 개선 관련 1 : 계절근로 관련 법률의 부재

가. 출입국 관리법 근거 없음

○ 외국인 기술연수(제19조의2), 외국인 유학생(제19조의4) 관련 법률과 고시는 마련되어 있는 반면, 계절근로는 2017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출입국관리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저 법무부의 지침(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법률에 근거가 없을 때 현장은 유동적이고 불안하게 움직임.

○ 개정안 신설 예시

<개정안-신설> : 예시
<p>제19조의5(외국인 농어업 계절근로) ⁸⁾</p> <p>① 법무부장관 은 농림수산부장관.... 과 협의 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농어업 고용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이하 “외국인 계절근로자”이라 한다), 담당 지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협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및 역량 강화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농어업기술/안전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농어업인력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5.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p>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모집·입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용자의 인권침해 여부, 근로장소 이탈 여부 및 그 원인, 근로계약 외의 활동 여부,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및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8) <참고 예시>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 지정된 산업체의 모집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적정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제10조 단 한 개 조문만

현 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p> <p>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p> <p>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3호 그대로 4호 추가</p> <p>4. “계절 외국인 노동자”란 <u>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사업장 또는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u>9).</p>
<p>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p>	<p>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p>

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정, 기술연수생의 모집·입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③ 기술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여부, 연수 목적 외의 활동 여부,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및 출국조치 등 기술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20. 6. 9.>

1.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u>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u>
<p>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u>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노동인권 현황 등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조정 3.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간 	<p><7조 전면 개정></p> <p>제7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및 정책위원회) ① <u>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및 정책위원회(이하 “배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배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협의가 필요한 사항</p>	<p>2. MOU???</p> <p>3.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p> <p>3.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p> <p>4.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요건 및 선정에 관한 사항</p> <p>5.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p> <p>5. ????</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u>배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④ <u>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되고, 위원은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u></p> <p>⑤ <u>??? 고용제도의 운영 및???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배정심사위원회에 <u>관련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u></p> <p>⑥ <u>배정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p>	<p>제10조 (외국인 농어업 계절근로 등) ① 법무부, 등은 농어업</p>

<p>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5에 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근로자를 고용 및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p>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¹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¹¹⁾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 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p>	<p>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공공형 계절근로 관련, ??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¹³⁾으로 정한다.</p>

<p>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¹²⁾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2(근로계약)</p>
	<p>제10조의3(재입국추천)</p>
	<p>제10조의4(취업교육 및 각종 지원) - 다른 특별법들의 지원 내용, 거창군의 사례 등 참고 하여</p>
	<p>제10조의5(사용자 및 공무원 교육) 사용자 교육 근로자 교육 인권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직업안정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농어업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공무원 교육도 인신매매 방지 교육</p>
	<p>제10조의6(공공형 계절근로 ?? 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p>
	<p>제10조의7(연장? 재입국 ??? 특례) 제10조의8(산재보험 등) 산재보험, 여행자보험, 의료보험?</p>

	<p>의무 가입</p> <p>제10조의9(사업장 변경 : 고용 변동 신고)</p> <p>인권 침해 시 사업장 변경</p> <p>문제 사용자 계절근로자 배정 금지</p> <p>제10조의11(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p>제12조의2(공공형계절근로사업장의 지정 등)</p>

<p>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p> <p>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p> <p>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p> <p>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p> <p>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신설</u></p> <p><u>제13조의2(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u> ① 지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한다.</p> <p>1. ???에 따른 ??? 또는 ???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p> <p>.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한 자</p> <p>. 파견법을 위반한 자?</p> <p>. ???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자</p> <p>. 수수료를 ?????한 자</p> <p>-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p>

	<p>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혹은 중대재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p>② ?????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p> <p>제13조3(차별 금지)</p> <p>제13조의4(기숙사의 제공 등)</p>
	<p>제13조5(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p>
<p>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p>	<p><신설></p> <p>제14조의2 (금지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이나 단체 위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지자체는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이 아닌 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및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의 중요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공정·투명하게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명시 ○ ‘양 국가의 지자체, 고용주는 항공료와 비자발급, 건강검진, 사전교육 등 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별도의 관리비용(수수료)을

	<p>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명시</p> <p>○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하여 근로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수수료)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시</p> <p>○ 근로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입금통장 보관 금지</p> <p>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국내 법 준수 의무</p> <p>2) 준수사항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확인서 발부</p> <p>벌점 부과</p> <p>벌점 관련 대통령령 위임</p>
<p>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지자체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p>사업</p> <p>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p> <p>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p> <p>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제18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p><18조의 2 신설></p> <p>우수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관련 특혜</p>
	<p>??의?(각종 신청 등의 대행기관 지정)</p>
	<p>제??조의?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p>

9) 현재 지역특화 비자에 대한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19. 12. 24.>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5. 조례의 파편화 : 도 차원의 조정 및 정책 마련 필요

가. 농어업계절이주노동 관련 조례 현황 : 시군 단위

-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이름으로

나. 도 차원의 조례제정 필요

-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 전라남도 관련 조례 없음, 노동력 착취 관련 인권침해 조례도 없음.

다. 관련 조례 담당 부서의 분산 :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부서 지정 필요

○ 관련 부서

- 대체로 농정과, 거창군은 전략담당관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19. 12. 24.>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12)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13)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전남: 인구청년이민국(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 내 지역특화비자, 다문화지원팀 등과 관련한 팀이 있으나 계절근로는 농업정책과로 분산.
-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국을 두고 있으나, 계절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 경상북도 : 계절근로는 농축산유통국 농업대전환과에서, 지방시대정착국 외국인공동체과는 따로
- 통합 부서 담당되어야 함.

라. 조례 비교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p>[시행 2022. 4. 7.]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 2610호, 2022. 4. 7., 제정] 전라남도 영암군(친환경농업과)</p>	<p>[시행 2023. 3. 29.]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62호, 2023. 3. 29., 전부개정] 경상남도 거창군(전략담당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u>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u>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과 파견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운영계획)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p>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번역료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거창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 시책 및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훈련
 4.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과 지원
 5. 농촌 일자리의 홍보와 정보제공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와 활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영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 농작업의 구인·구직 확대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확보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p>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p> <p>6. 파견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p> <p>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p> <p>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p>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p> <p>가. 농업인들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p> <p>나. 농촌인력 증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p> <p>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9조(회의 운영 등)</p> <p>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간사는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p>
---	--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표준안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운영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2. 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농업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 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 물품
- 3. 내국인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 나.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에 드는 비용
 - 3. 감염병 방역 및 격리 비용,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지원 신청 등)

-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62호 전부개정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시고용인력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본다.

<첨부 1. >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피해자식별지표(제2조 관련)

1. 일반 적용기준

가. 피해자식별지표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신속·정확한 발견과 조사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일반화된 지표로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 등의 피해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아래 지표의 ‘행위’, ‘수단’, ‘목적’의 해당 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잠재적피해자”라 한다)의 국적·성별·연령·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지표 항목을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법 제2조제1호 후단의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래 지표 중 ‘수단’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

라. 잠재적피해자가 ‘행위’, ‘수단’, ‘목적’의 각 항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해자식별지표의 세부 점검항목

가. 인신매매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input type="checkbox"/>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 광고(인쇄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했다.	모 집
<input type="checkbox"/>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	운 송

항 목	요 소
지까지 동행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은 닉
<input type="checkbox"/>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되었다.	인 계 수

나.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input type="checkbox"/>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되었다.	위 력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input type="checkbox"/>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 (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위 계 (사기·기만 등 유인 포함)
<input type="checkbox"/>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위 ‘수단’ 요소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통제수단

- 사업장에서 부당한 규칙을 이용하여 과도한 벌금을 물렸다.
-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증명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 경비 제공, 숙박, 이탈보증금 등)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했다.
- 노동의 대가로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물리적 통제수단

- 고용주, 기획사 관계인, 중개인, 사업장 관계자 등에게 성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을 당하였거나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 계약 조건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켰다.

-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에서 다른 업소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지역에서 일했다.
- 숙소에 고용주 및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등 감시를 당했다.
- 음식, 물, 생필품 등을 제한받았고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다.
- 일하던 곳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전자감시와 같은 보안장치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된 상태로 감금당했다.
- 외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 휴대전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본인이 소지 못하거나 신분증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정서적 통제수단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 국내에서 내쫓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성매매, 불법체류,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등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를 탈출하면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
-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주소 및 위치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용관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다.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input type="checkbox"/>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증명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제공, 숙박, 이탈보증금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구실로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공통
<input type="checkbox"/> 자유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았다.	
<input type="checkbox"/>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적 착취를 당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input type="checkbox"/>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숙식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노동력 착취
<input type="checkbox"/>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input type="checkbox"/> 당사자가 장기 적출을 주장하거나 신체의 흔적이나 상처로 인해 불법 장기이식이 의심된다.	장기적출 등 착취

< 첨부 2. 도 차원의 조례 >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 6.] [경상북도조례 제4940호, 2023. 11. 6., 제정]

경상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시·군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와 공급 계획
2. 고용 실태 및 주거 등 근로 환경의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시·군의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 파악
2.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인력 배치) 도지사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 지원 계획에 따른 시·군 및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군 또는 고용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조례 제7721호, 2023. 8. 7., 일부개정]

경기도(농업정책과), 031-8008-4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근로·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5. 단기취업(C-4)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1. 비전문취업(E-9)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농어촌에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2023.8.7.>]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
3. 농어업 분야별·종사자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2023.8.7.>]

4.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2023.8.7.>]

5. 농어촌 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23.8.7.>]

6.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23.8.7.>]

7.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2023.8.7.>]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2023.8.7.>]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권보장 지원

- 가. 인권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나.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다.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근로환경 지원

- 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 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 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목적 공간 마련
- 라. 필수 장비 구입 지원

3. 주거환경 지원

- 가. 기숙사 건립
- 나.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 다. 지역 숙박시설 지정
- 라. 숙소 임대료 지원

4.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2023.8.7.]

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다만, 농어업 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전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7.]

6.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원 [신설 2023.8.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인식에 관한 사항
2.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지역별 인력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
3.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2023.8.7.>]

4.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2023.8.7.>]

5.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23.8.7.>]

6. 생활 및 정착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23.8.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2023.8.7.>]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3.8.7.>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후단신설 2023.8.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2024-05-16 조례 제 5983호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86-25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등”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16.>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개정 2024. 5. 16.>
2. 외국인노동자등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 <개정 2024. 5. 16.>

3. 외국인노동자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연구 <신설 2024. 5. 16.>
4. 농어촌 사회 정착지원 <신설 2024. 5. 16.>
5. 재원 조달 및 운용 <신설 2024. 5. 16.>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 ②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등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개정 2024. 5. 16.>
 2. 외국인노동자등을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개정 2024. 5. 16.>
 3. 외국인노동자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5. 16.>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5. 16.>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4. 5. 16.>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